

(參照)

성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 안 번 호	1030
------------	------

2001 2. 9.

1. 제안이유

-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모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차원높은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을 보면

- 성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는 목적을
- 동조례 제2조의 위원회 기능은
 -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조사, 자료의 수집,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
 -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
 - 주민의 의견수렴에 필요한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에 관한 사항을
- 동 조례 제3~4조에서는
 - 1)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
 - 2) 위원의 자격 및 위촉에 있어서
 - 의회 각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인사
 -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관련 기관에 3년이상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교수등 저명인사

○ 전직 공무원으로써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인사등을
의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며

- 동 조례 제5조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
- 동 조례 제7~8조에서는 회의 소집과 자문에 관한 사항을
- 동 조례 제9조는 위원의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

3. 검토의견

- 지방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
본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의정
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지역 현안
사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라고
판단하며
- 본 조례 제4조 제1항 3호에 『전직 공무원』을 『전직 공무원 또는
의원』으로 하여 전직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등을 참여할 수 있게 하는
것이 효과적이라 사료되오니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
판단됩니다.